

(별지 제1호 서식)

## 감 사 보 고 서

교육부 장관 귀하  
학교법인 송강학원 이사회 귀중

사립학교법 제19조 제4항 및 사학기관재무·회계규칙 제41조에 의하여, 학교법인 송강학원 (광주여자대학교)의 2021회계연도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자, 사학기관 감사업무처리 유의사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.

감사결과 (다음의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) 학교법인 송강학원(광주여자대학교)의 재산상황·회계와 이사회의 운영 및 그 업무 처리는 관계 법령에 의거 적정하게(지적사항이 있을 경우 내용 명시) 처리하고 있음을 사학기관 감사업무처리 유의사항에 따라 확인하였습니다.

다음 : 지적사항 내용

| 구 분           | 재산·회계감사 지적사항 |     | 이사회 운영<br>및 업무감사<br>지적사항(건) | 비고 <지적사항 없는 경우<br>: 지적사항 없음(표기)>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   | 건수           | 금 액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. 법인 일반업무 관련 |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지적사항 없음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2. 법인 수익사업 관련 |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지적사항 없음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3. 학교 관련      |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지적사항 없음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계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- 붙임 : 1. 학교법인 송강학원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 조치계획(별지 제1의1호 서식)  
2. 광주여자대학교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 조치계획(별지 제1의2호 서식)  
3. 사학기관재무·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41조에 의거 작성하는 내부 감사보고서

2022년 4월 20일

학교법인 송강학원

감 사 최 규 철 (인)

감 사 국 승 열 (인)

(공인회계사 등록번호 제12554호)

※ 공인회계사를 선임한 대학에 한하여 공인회계사 등록번호 기재

피감사 기관장

2022년 4월 20일

학교법인 송강학원

이 사 장 오 장 원 (인)

피감사 기관장

2022년 4월 20일

광주여자대학교

총 장 이 선 재 (인)

(별지 제1의1호 서식)

## 학교법인 송강학원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 조치계획

(회계연도 : 2021년 3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)

· 지적사항(내용) : 법인 일반업무회계와 수익사업회계 구분 표시

| 감사결과 지적사항(내용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피감사 기관장의 시정 조치계획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<input type="checkbox"/> 법인일반업무회계<br>지적사항 없음<br><br><input type="checkbox"/> 법인수익사업회계<br>지적사항 없음<br><br>(기술내용이 많을 경우 별도 붙임) | 지적사항 없음          |
| 피감사기관장 <u>학교법인 송강학원</u> 이사장 오장원 (직인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

(법인 일반업무회계 · 수익사업회계)



(별지 제1의2호 서식)

## 광주여자대학교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 조치계획

(회계연도 : 2021년 3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)

· 지적사항(내용) :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 구분 표시

| 감사결과 지적사항(내용)       | 피감사기관장의 시정 조치계획    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지적사항 없음             | 지적사항 없음             |
| (기술내용이 많을 경우 별도 붙임) |                     |
| 피감사기관장              | 광주여자대학교 총장 이선재 (직인) |

(교비회계 · 부속병원회계)



## 감 사 보 고 서

학교법인 송강학원 이사장 귀하

우리는 사립학교법 제19조 제4항 및 사학기관재무·회계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 송강학원(광주여자대학교)의 2021회계연도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 및 2022년 2월 28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계산서·운영계산서 및 각 부속명세서를 감사하였습니다.

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우리는 일반적인 감사기준을 준용하였습니다.

우리의 의견으로는(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) 학교법인 송강학원(광주여자대학교)의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은 적절하며 별첨 재무제표는 사학기관재무·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라 학교법인 송강학원(광주여자대학교)의 2022년 2월 28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수지 및 운영성과의 내용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.

2022년 4월 20일

학교법인 송강학원

감사 최 규 철

감사 국 승 열



피감사자(임회인)

직명 법인팀장

성명 강 경 준

